

제 11 장 논문 또는 작품지도

- 제 48 조 (지도교수 자격 및 변경) ① 논문 또는 작품지도교수의 위촉 시기는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초 (교육대학원 4학기초),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초로 한다. (2015.10.27)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004.10.26) (2005. 2. 3) (2005. 6.14)
- ② 논문 또는 작품지도교수는 각 학위과정 학생이 신청하여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010.10.20)
- ③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06. 8.21) (2006.12. 1)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전공)교수 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2015.10.27)
- ④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과정은 변경 후 2학기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 ⑤ 지도교수의 질병, 사망 등 특수한 사항으로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는 4항을 예외로 한다. (2012.11. 1)
- ⑥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5. 2. 3) (2006. 3.10)
- ⑦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005. 2. 3)
- ⑧ 석사과정 학생은 학부과정 학생을, 박사과정 학생은 석사 또는 학부과정 학생을 각각 결연학생으로 지정한다. (2006. 3.10 삭제)
- 제 49 조 (지도신청서 및 지도보고) ①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선정 시 학위논문지도신청서 또는 작품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석사는 2개 학기 이상, 박사는 3개 학기 이상 논문작성지도 또는 작품지도를 받아야 한다.(2015.10.27) 단, 학점추가 취득에 의한 학위취득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2005. 2. 3) (2005. 4. 7) (2006. 3.10)
- ② 과정수료 후 논문 또는 작품지도 신청을 받아야 할 경우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지도신청서와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2. 3)
- ③ 각 대학원장의 위촉을 받은 지도교수는 논문 또는 작품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행하며 그 진행사항을 매학기 말 논문 또는 작품지도결과보고서로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위청구논문지도를 받는 자는 우리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지도 및 학위청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0.10.20)
- 제 50 조 (지도학생수 제한) 논문 또는 작품지도학생수는 매학기 지도교수 1인당 일반대학원은 5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합하여 총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013. 6. 1)